

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
공고합니다.

2024년 11월 05일

상하동장
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인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유 *정	유 *정 1984-08-10	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어정로 (상하동)	직권말소 2024-11-05